

—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시스템 구축 활성화로 인터넷서비스 제공 기반조성
-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.

3. 주요내용

-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(제2장)
- 사이버 민원실 운영(제3장)
- 전자우편 ID 보급(제5장)
-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·운영(제6장)
-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(제7장)

4. 참고사항

-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안임.
- 여타 조항은 조례 표준안과 동일하나 제4조(인터넷시스템 개선) 내용 중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“연1회 이상” 이용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준안에 되어 있는바 “연1회 이상”이 누락되어 있으며,

○ 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③항은 표준안에는 없는 항목으로서 “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 게시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”토록 한 내용은 ②항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사료됨.